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제3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금품 제공·수수 금지〉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742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황 승 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미애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6. 3. 25.
3. 회 부 일 : 2026. 3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그러나 실제 정치 현실에서는 금품 제공·수수 행위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제3자를 통한 우회적 방식이나 알선·중개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에도 법리상 처벌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존재하나, 명시적인 금지 규정이 없어 위법성 입증과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공천과 관련한 금품 제공이 제3자를 매개로 이루어질 경우, 행위의 실질이 은폐되어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금품 제공·수수 행위가 직접적인 경우뿐 아니라 제3자를 통

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까지 명확히 금지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
적용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
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 제공·수수 행위가 직접적인 경우뿐 아니라 제3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까지 명확히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illegible]

우자, 국회의원등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에게 채무의 변제, 대여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때에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② (생략)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약속·지시·권유·알선 등을 금지하고, 이와 같은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¹⁾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금품 제공·수수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정당 내부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왜곡되고, 결과적으로 공직선거의

1) **법 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 후보자등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당비를 납부하는 외에 정당 또는 국회의원[「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제3항에 따른 국회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 당원협의회 대표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회의원등"이라 한다], 국회의원의 배우자, 국회의원등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에게 채무의 변제, 대여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때에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 또는 요구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⑥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엄격히 규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²⁾

그런데, 실제 정치 현장에서 제3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금품 등이 제공되고, 그 대가로 공천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³⁾

이에 개정안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 제공·수수 행위가 직접적인 경우뿐 아니라 제3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까지 명확히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공천을 받고자 하는 자 본인 외에 브로커 등 제3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금품 제공·수수 등을 차단함으로써 공천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결과적으로 보다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
- 2) 대법원은 공직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전의 수수행위는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30조제6항 및 제47조의2제1항은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부터 금권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명정대한 선거를 만들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 대법원 2009.5.14. 선고 2008도11040 판결.
- 3) “현행법은 공천과 관련한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 정치 현장에서는 제3자를 통한 우회 기부나 지인·측근을 통한 알선, 후원금 형태의 간접 거래 등으로 법망을 피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에 따라 공천 과정에서의 금품 거래 의혹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명시적 규정 부족과 입증 한계로 실질적인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연합뉴스, “김미애 의원, 돈 공천 차단 법안 발의…제3자 우회 후원 금지”, 2026.3.25.

제3자를 통한 금품수수 행위와 관련하여 법원은 현행법 제47조의2제1항의 ‘제공’의 의미를 최종 수령자에게 금품의 전달이 완료되는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중간자가 금품 배분의 대상, 방법, 배분 액수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를 가진 경우 그에게 돈을 건넨 행위 자체를 ‘제공’으로 보아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

《 법 제47조의2제1항의 ‘제공’의 의미 관련 판례의 입장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제공’은 반드시 금품을 ‘상대방에게 귀속’시키는 것만을 뜻하는 것으로 한정 해석할 것은 아니고, 중간자에게 금품을 주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중간자가 단순한 보관자이거나 특정인에게 특정금품을 전달하기 위하여 심부름을 하는 사자(使者)에 불과한 자가 아니고 그에게 금품배분의 대상이나 방법, 배분액수 등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는 한 비록 그에게 귀속될 부분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제공’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관한 대법원 2002.2.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부터 금권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명정대한 선거를 보장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와 규정 형식, 공직선거법의 다른 규정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법리는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의 ‘제공’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전고등법원 2019.5.9. 선고 2019노56 판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가공

이에 따르면, 현행 규정으로도 특정 유형의 제3자에 대한 금품제공 행위는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안에 따라 제3자를 통한 금품 제공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경우 현재까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금품의 단순한 보관자 또는 심부름을 하는 사자에 불과한 제3자까지 처벌대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공천 관련 금품 제공·수수 행위 금지를 명문화할지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3